

# 대법원판례(2014도1104 전원합의체) 변경에 따른 2018 테마형법 수정사항

## 〈각론 II 권〉

p.34 상단 6째줄 "비교판례" 일부수정

▶ **비교판례** : 회사의 ~ 하더라도 **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경우** 회사에 대하여 **배임죄**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(대판 2013.2.14, 2011도10302). 14. 경찰 간부, 15. 법원행시, 16. 순경 2차, 17. 변호사시험

↓

▶ **비교판례** : 회사의 ~ 하더라도 **그 약속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배임죄의 기수범이 되고, 유통되지 않았다면 배임미수죄이다**(대판 2017.7.20, 2014도1104 전원합의체). 14. 경찰 간부, 15. 법원행시, 16. 순경 2차, 17. 변호사시험

p.45 문제 12번 지문 ㉠ 일부수정, 해설 ㉠ 교체

㉠ 회사의 ~ 알지 못하였으며, 상대방이 위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유통시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경우

↓

㉠ 회사의 ~ 알지 못하였으나 **그 약속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된 경우**

〈해설〉

㉠ 대판 2017.7.20, 2014도1104 전원합의체

p.48 문제 18번 지문 ㉠ 일부수정, 해설 ㉠ 교체

㉠ 대표이사 ~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가 성립한다.

↓

㉠ 대표이사 ~ 그 약속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.

〈해설〉

㉠ ○ : 대판 2017.7.20, 2014도1104 전원합의체

p.48 문제 19번 해설 ㉠ 교체

㉠ 대판 2017.7.20, 2014도1104 전원합의체

p.108 문제 12번 지문 ㉠ 일부수정, 해설 ㉠ 교체

㉠ 회사의 ~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**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** 할 것이다.

↓

㉠ 회사의 ~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**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이 충족되었다**고 볼 수 없다.

〈해설〉

㉠ ○ : 대판 2017.7.20, 2014도1104 전원합의체